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<br>(제 회) |      |

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 | 국무위원 구윤철<br>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6. . .    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물가 안정 목적에서 할당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할당관세 물품 중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추천 시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,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물품에 추가하는 한편,

할당관세 적용 물품과 관련한 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추천 및 추천요건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추천기관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서로 통보하도록 하고, 보호무역 조치 증가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대항 조치 시행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및 추천방법 규정(안 제92조제1항 및 제4항)

- 1) 관계부처의 장 등이 할당관세 부과를 요청할 때 신속한 공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

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- 2) 추천기관이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추천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천요건으로 정하여 추천하도록 하고, 해당 요건을 위반한 수량에 대해서는 추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.

나. 할당관세 추천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(안 제92조제10항 및 제11항)  
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 추천 물품, 추천을 받은 자 등 관련 정보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세관장이 추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위반사실을 추천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.

다. 추천 취소 시 적용되는 세율 명확화(안 제92조제12항)

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 요건을 위반하여 추천 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추천이 취소된 경우 해당 수량의 물품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.

라. 대항조치 시행을 위한 준용규정 신설(안 제95조의2)

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 영 제86조에 따른 보복관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

마.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물품 추가(안 제248조제2호)

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에 할당관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것을 추가함.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부,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자의”를 “자(이하 이 조에서 “추천기관”이라 한다)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본문 중 “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”를 “추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당해 물품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(이하 “집중관리 품목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근거

④ 추천기관은 제1항제4호의 요청에 따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추천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기한 등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천 요건으로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요건을 위반한 물품의 수량을 정하여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.

⑩ 추천기관이 추천을 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추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추천 물품 및 추천의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
  2. 추천을 받은 자와 그 수량
  3. 추천을 취소한 경우 해당 추천을 받은 자와 그 취소된 수량
- ⑪ 세관장이 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반출기한 등 추천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⑫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 요건을 위반하여 추천 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추천이 취소된 경우 해당 수량의 물품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.

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5조의2(준용규정)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1호의 “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”를 “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나라”로, 제86조제1항제3호의 “피해상당액의 금액”은 “법 제79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과 가능한 관세의 범위”로 본다.

제248조 중 “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
2.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집중관리 품

목으로 지정된 물품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및 추천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9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③ 제92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천하거나 추천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준용규정에 관한 적용례)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9조에 따른 대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물품에 관한 적용례) 제24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92조(할당관세) ①관계부처의<br>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<br>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<br>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<br>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<br>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<br>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<br>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92조(할당관세) ①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3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 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<u>당해 물품을 할당관세 집중</u><br><u>관리 품목(이하 “집중관리 품</u><br><u>목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고</u><br><u>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근</u><br><u>거</u>       |
| ②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<br>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<br>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<br>위임을 받은 <u>자의</u> 추천으로 행<br>한다. 다만, 재정경제부장관이<br>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<br>고 순위에 따르되, 일정수량에<br>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<br>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| ③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자(이하 이 조에서</u><br><u>“추천기관”이라 한다)의</u> -----<br>----.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|

비례하여 할당한다.

<신 설>

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⑤ ~ ⑧ (생략)

<신 설>

-----.

④ 추천기관은 제1항제4호의 요청에 따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추천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기한 등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천 요건으로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요건을 위반한 물품의 수량을 정하여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.

⑤ ----- 추천기관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⑥ ~ ⑨ (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)

⑩ 추천기관이 추천을 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물품의 추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추천 물품 및 추천의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
2. 추천을 받은 자와 그 수량
3. 추천을 취소한 경우 해당 추천을 받은 자와 그 취소된 수량

⑪ 세관장이 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반출기한 등 추천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⑫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 요건을 위반하여 추천 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추천이 취소된 경우 해당 수량의 물품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.

제95조의2(준용규정)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1호의 “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”를 “법

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15 - 4431 |